

정부의 축산장기발전대책

—양돈분야를 중심으로—

—농림수산부—

1. 머리말

우리나라의 축산업은 지난 20년동안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육규모가 구조적으로 영세하고 수급 및 가격안정 등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확고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가격이 불안전한데다가, 축산물의 수입자유화도 확대될 전망이어서 양축경영의 여건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와같은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축산업을 경쟁력 있는 농가의 주요 소득원으로 육성 발전시키고자 2001년까지의 12년간에 걸친 축산장기발전대책을 확정하였다.

이 대책중 양돈분야와 관련된 주요내용을 알아보기로 한다.

2. 주요내용

가. 돼지고기 수급전망 및 소요 사육두수

'74년부터 '88년까지 15년간의 생산 및 소비추세를 분석하여 설계한 수급모형에 소득증

가, 인구증가 등 경제기획원의 경제예측지표를 전제로 전망한 2001년의 돼지고기 총수요는 '89년의 47만2천톤 대비 2배 정도인 92만5천톤이다. 이와 같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는 다소간의 돼지고기 수입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1천만두 수준의 상시사육두수가 필요하다.

나. 발전대책

축산장기발전대책의 양돈관련사항에 대하여는 수급 및 가격안정, 사육규모의 확대, 종돈개량, 유통개선, 수입개방에의 대응, 공해방지 등으로 부문을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 수급 및 가격안정

(가) 안정기준가격제도의 도입

돼지는 계절적으로 가격이 등락하면서 3~4년마다 가격파동이 온다는 점을 감안, 상한가격과 하한가격을 정하여(가격안정대), 그 가격범위내에서 수급 및 가격을 안정시켜 나가는 안정기준가격제도를 신설,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금년중에 축산법을 개정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상한가격은 재생산가능 및 안정적인 소비측면을 고려한 수준에서, 그리고 하한가격은 직접생산비 보전측면을 고려한 수준에서 농림수산부 장관이 매년 결정, 고시하게 되며, 돼지고기 가격이 하한가격 이하로 하락할 때와 상한가격 이상으로 상승할 때에는 법령에 근거한 수매, 비축, 방출 등의 가격안정조치가 취하여진다.

(나) 수급예측기능의 확충 강화

'80년대 초부터 축산관측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초기에 비하여 많은 발전을 해 오면서 이해기반도 마련되었다.

현실의 수급상황은 훨씬 전에 이루어진 요인의 결과라고 볼 때, 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알맞게 생산을 조절하는 것이 수급안정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나서 단기적인 수급불균형에 따라 가격이 등락하는 것을 조정하기 위하여 보완적으로 가격안정제도가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 축산관측은 단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급안정의 사전적 대책을 위한 사육조절이 미흡하고, 또한 수급시책에 있어서 자칫 수급현실의 과거요인과 취하고 있는 현재의 수급대책이 미래에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를 간과함으로써 수급불균형이 지속적으로 되풀이 될 우려를 다분히 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축산장기발전대책에서는 현행의 단기적인 생산관측을 단기·중기·장기의 생산·소비관측으로까지 확대 강화하기로 하였다.

(다) 등록·허가제운명을 통한 수급조절 강화

현행의 양돈업 등록·허가제는 앞으로도 계속 운영되며, 생산의 과부족시 등록·허가 양돈업체에 대한 생산조절을 탄력적으로 하기로

하였다.

(2) 사육규모의 점진적 확대 및 구조개선

'89년말 현재의 개별 농가 양돈규모는 호당 평균 24두이다. 2001년까지는 이를 100두 내외로까지 확대한다는 목표 아래 대기업의 양돈참여를 지속적으로 규제함과 아울러, 기존의 대기업양돈에 대하여는 수출확대에 주력토록 하여 내수 증가분을 소규모양돈농가에서 늘려 키우도록 하기로 하였다. 또한 시설자동화 등을 위한 양축자금의 지원도 확대하고, 배합사료 등 축산기재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도 추진하며, 계열화사업도 정착, 확대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유통개선의 지속적 추진

(가) 도축장운영의 합리화

'89년말 현재의 도축장 수는 180개소인데 그 규모가 영세하고 시설이 낙후되어 있어 육류유통성의 문제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유통권역별로 있어야 할 곳의 도축장에 대하여 육가공시설을 병행지원하며, 부분육유통센터화 함으로써 지육·부분육의 유통기반을 조성해 나가기로 하였다.

(나) 도매시장 증설 및 기능강화

현재 전국에는 축협이 축산물공판장 1개소를 포함하여 모두 9개소의 축산물 도매시장이 있는데, 앞으로 인구 1백만 이상의 대소비지에는 축산물공판장 또는 도매시장을 개설하기로 하였다. 2001년까지는 모두 17개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현재 생축형태로 반입되고 있는 것을 점진적으로 산지에서 도축·처리된 지육·부분육이 반입되도록 유도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생축수송과정에서의 감량, 소비지 환경오염, 과잉출하시의 차상계류 등에 따른 경비추가부담의 문제들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 육류등급제의 시행

육류등급제는 지육으로부터의 정육 수율과 육질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육류를 거래토록 하는 제도로써, 이 제도는 생산자로 하여금 육질개량에 힘써 좋은 질의 고기를 생산토록 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수입개방화에 대비하여 품질경쟁기반을 마련토록 하며, 현행의 생축유통체제를 지육유통체제로 전환토록 유도함에 광역유통의 원활을 기하도록 함과 아울러 소비형태의 다양화에 부응하여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90. 6월 현재 그 등급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하반기에는 제도시행의 법적 근거마련을 위해 축산법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이 제도의 시행은 '91년도로 되어 있으며, 축산물의 수급이 안정되는 시기를 택하여 실시할 것이다.

(라) 가공업의 육성지원

축산물가공업무의 행정적 소관이 보건사회부로 되어 있어 축산물의 과잉생산 또는 공급부족시 수급조절대책의 효율적 추진에 애로가 있고,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한 양축농가 보호방안 추진이 어려우며, 축산물의 유통구조를 소비단계 즉, 식품수급단계까지 확대하는데 행정적인 한계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부처간의 협의를 통해 축산물의 가공업무를 농림수산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하였다.

(4) 수입개방대책

GATT/BOP 협의결과 무역수지적자를 이유로 한 수입제한 규정의 원용이 중단됨에 따라 '97년까지 현재 수입이 제한되어 있는 77개 축산관련 품목의 수입자유화가 불가피하게 되었으나, 정부로서는 국제경쟁력이 있는 품목, 잠재적인 경쟁력이 있는 품목 등에 대하여 단계

적으로 수입자유화를 예시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

단계적으로 수입자유화를 예시함과 아울러 보완대책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갈 것인 바, 그 내용으로는 축산장기발전대책의 착실한 추진으로 축산업의 구조를 경쟁력이 있도록 조정하고 생산비 절감대책을 추진하며, 대외무역법 규정에 의한 산업피해 구제제도를 적극 활용함과 아울러, 수출입 축산물에 대한 안정성검사와 검역 및 위생기준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국제화·개방화 추세에 소극적 수동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으로 조금만 보완하면 국제경쟁력을 손색없이 갖출 수 있는 돼지고기와 머지않아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닭고기를 수출유망품목으로 지정하여 적극 지원키로 하였다. 양돈에 있어서는 돼지개량과 더불어 수출규격돈 생산지도를 강화하고 돼지고기 수출전용도축장 설치를 허용하며, 수출가득율이 높은 냉장육수출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대책의 계획기간인 2001년까지 33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여 소요 시설을 갖춰나가기로 하였다.

(5) 분뇨처리시설 자금지원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축산공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중·소규모 양축농가를 중점대상으로 하여 가축분뇨의 분뇨저장탱크 및 간이정화조 시설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축협 또는 요건을 갖춘 민간업체에 교반기·살포기·차량 등 분뇨처리 장비를 지원하여 농가로부터 가축분뇨를 수거, 농경지에 살포토록 하는 등 가축분뇨의 비료 및 사료자원화 활용을 제도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